

1.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 한 경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실험장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등 폐수처리업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점검 및 교정 시 종이문서 작성·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송토록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합리화(안 제50조제5호)

측정기기 점검 및 관리사항의 종이문서 작성·보관(3년) 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전송토록 함.

나. 안경원(기타수질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 지정(별표 19)

안경원 렌즈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 배출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부직포 평균 공극크기 기준($10\mu\text{m}$ 이하)을 삭제함.

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구분 정비(별표 20)

1) 폐수처리업 허가요건(별표 20)의 구분 분류 중 “시설 및 장비”를 “실험실 및 실험장비”와 “시설 및 장비”로 세분화함.

2) 폐수처리업자가 처리수의 오염물질 전체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 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한 경우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3) 실험기기·기구를 임차 계약한 경우 해당 항목의 실험기기·기구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수의 해양배출 규정이 삭제('16.5)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제42조, 제90조)

1) 위탁처리대상 폐수에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폐수 삭제함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폐수 처리방법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삭제함

3)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삭제함

마.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용중지 명령 절차 등 명확화(안 제91조의3)

시·도지사가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시 명시해야 할 사항 및 폐수처리업자가 사용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한 경우 명령 철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기재란을 추가(별지 1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성상(性狀)이”를 “성질·상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50조제5호 중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나목 중 “설치계획”을 “설치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업장”을 “사업장 및 실험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측정항목에 대해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의 변경(계약기간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91조제4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을 “「해양환경

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로 한다.

제91조의3의 제목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조치명령의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 중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를 “지정폐기물처리업자”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9 제1호1) 단서 중 “치어”를 “치어(어린물고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5)를 제5호6)으로 하며, 같은 6)(종전의 5)) 중 “평균 공극크기 10 μ

m 이하”를 “여과지”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배출 허용기준 항목은 셀레늄·납·구리(동)함유량,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페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한다.

별표 20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제2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을 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제3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험실 및 실험장비	가. 실험실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제3호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실험기기 및 기구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총유기탄소량(TOC) 4) 부유물질(SS) 5) 페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재생·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6) 시안	
	7) 총크롬 및 6가크롬	
	8) 아연	
	9) 구리	
	10) 카드뮴	
	11) 비소	
	12) 납	
	13) 용해성 망간	
	14) 플루오르	
	15) 수은	

별표 20 비고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해당”을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체 항목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실,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0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같은 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아니하여도 된다”를 각각 “않을 수 있다”로 한다.

4. 실험기기·기구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기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측정기기·기구를 폐수처

리업의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별표 21 제11호 중 “운반시설로서”를 “폐수운반장비로”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이하이어야”를 “이하여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제2호라목 3)”을 “제3호나목3)”으로, “수탁하여야”를 “수탁해야”로, “분리·저장하여야”를 “분리·저장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제2호라목 3)”을 “제3호나목3)”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설치 [] 허가증 [] 신고증명서		
제	호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⑥ 종 류	종	
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		
⑨ 폐 수 배 출 요 인 명 세				
원 료 명	사 용 량	생 산 제 품 명	생 산 량	
허가 또는 신고 사항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따로 붙임			
	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폐수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배출항목		
⑫ 폐수처리계통도: 따로 붙임					
⑬ 허 가 또 는 신 고 의 수 리 조 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부지면적 m ²)			☐ 해당 ☐ 해당없음 ※해당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53조1항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부장관 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 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m²]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험실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측정대행계약,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 「지방자치법」 제198조----- ----- ----- ----- ----- ----- ----.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u>성상(性狀)</u> 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성질·상태가</u> ----- ----- ----- ----- -----

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6에 따른 폐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4. 5. (생략)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
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
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
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자에게 제41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

<삭 제>

4. 5.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
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
의 처리)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오

3. · 4. (생 략)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
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
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생 략)

나.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환경관리
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폐
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 ·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
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
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
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다. ~ 마. (생 략)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기
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3. · 4.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 제출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기
준)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
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
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
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생략)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
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
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
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
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5. -----

----- 영
제37조-----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생략)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 7. (생략)

③ ~ ⑥ (생략)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1.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 설치명세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u>사업장 소재지의 변경</u> 라.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생략)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u> 라. (현행과 같음) 마. <u>측정항목에 대해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의 변경(계약기간의 변경은 제외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u>----- ----- ----- -----
--	--

은 제외한다) 4. (생 략) 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 검사) ① ~ ⑥ (생 략)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4.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내용, 조치명령의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의 사 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 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 는 시·도지사에게 명령의 철회 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 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 령을 철회해야 한다.
--	---